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제629호 2017. 06. 22.(목) 정책복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윤은희 의원 등 7인

### 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7년 05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06월 02일

다. 상정일자 : 2017년 06월 09일

-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#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윤은희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·수탁 관련사항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 편,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시군 보육정책위원회 수행 기능 삭제(안 제6조)
-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되, 기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름(안 제12조)

- 센터의 장 임기를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함(안 제15조)
- 센터장이 담당하던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함(안 제17조)
- 부칙
  - 적용례 : 제12조제3항, 제15조제5항의 위탁기간 및 센터의 장 임기 규 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수탁기관 및 센터의 장부터 적용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)

### 가. 주요 내용 검토

○ 안 제6조는,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「영유아보육법」상 시장·군수의 위임사무인, 제7호(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), 제8호(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) 및 시장· 군수의 위임사무이자 시·군 보육정책위원회 사무인 제9호(벽지·농어 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)에 대한 심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함.

조례(제6조)	관계 법령
제7호	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제26조(권한의 위임)
	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
	별자치도지사· <u>시장·군수</u> ·구청장에게 <b>위임</b> 한다.
제8호	1.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
	2.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
	3.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
	격취소에 관한 권한
제9호	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40조(도서・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)
	② 특별자치도지사· <b>시장·군수</b> ·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제1항
	에 따른 도서·벽지·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<b>지방보육정책위원</b>
	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
	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	1.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
	2.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

- 안 제8조는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'해촉'을 '위촉 해제'로 변경 하고
  - 같은 조 제2호 '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'는 적용에 있어 조문규정이 불명확한 바, 이를 '직무와 관 런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'로 변경함. ※ 비위(非違): 법에 어긋남
  - 안 제12조는, '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'(이하 '센터'라 함)의 위 탁기간과 센터장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한 것으로,
    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개정(2016. 8. 3.)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었으나, 센터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충북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의 위탁기간을 유지해 오고 있음.
    -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,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위탁을 5년 이내로 하도록 권고하였고, 업무 성격 상 복지시설과 위탁기간에 있어 차별을 둘 별도의 필요성이 전혀 없으며, 오히려 3년 단위의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업무 집중의 어려움 등 운영 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점 등으로 판단할 때, 안 제12조의 센터 위탁 기간과 안 제 15조의 센터장 임기를 5년 이내로 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### ※ **2017**년 보육사업 안내 (pp. 426~427)

<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위탁> 업무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,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음.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

- 또한, 안 제12조 제5항의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보고 의무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18조에 따라 도에서 센터에 대한 지도·감독을 하고 있으며,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 시 센터 운영상황 등을 회의에 부치거나 보고토록 할 수 있는 바, 별도의 보고 의무 조항은 필요성이 미약하고, 다소 과한 규제로 판단됨. 따라서 제5항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※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

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~ 9. (생략)

10.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**제18조(지도·감독)**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- 안 제17조는, 기존 센터장이 담당하던 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'위원 중 호선'으로 변경한 것으로,
  - 센터의 운영계획, 주요업무 추진, 센터장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, 운영 투명성 및 외부 인사의 관심 및 역할 제고 측면에서 호선(互選)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  - 현재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 등 타 지역에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음.
- 안 제23조는,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사유를 「영유아 보육법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한 조건과 통일 한 것임.
  - 현행 제1호의 "법령"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해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, 같은 호의 "보조 조건"도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현행 제1호는 삭제하고 안 제4호에 시행규칙 제 35조의9에서 정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부칙은, 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 시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, 제12 조제3항의 위탁기간 및 제15조제5항의 센터의 장 임기 규정을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수탁기관 및 센터의 장부터 적용토록 하였음.

### 나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법리상 문제가 없으며,
- 절차상으로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, 또한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  - ※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-30호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 - 「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###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윤은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9

**발의연월일** : 2017년 5월 31일

발 의 자 : 윤은희, 이광희, 이양섭,

김영주, 박우양, 박종규,

최광옥

### 1. 개정이유

○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·수탁 관련사항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,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시군 보육정책위원회 수행 기능 삭제(안 제6조)
- 나.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되, 기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름(안 제12조)
- 다. 센터의 장 임기를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함(안 제15조)
- 라. 센터장이 담당하던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함(안 제17조)

마. 부칙

- 적용례 : 제12조제3항, 제15조제5항의 위탁기간 및 센터의 장 임기 규 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의 수탁기관 및 센터의 장부터 적용

### 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
다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-30호

라. 협 의 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와 협의함.

마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- 제8조의 제목 "(위원의 해촉)"을 "(위원의 위촉 해제)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원을 해촉"을 "위원의 위촉을 해제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- 제12조제3항 중 "3년으로"를 "5년 이내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⑥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5조제5항 중 "3년으로"를 "5년 이내로"로 한다. 제17조제5항 중 "센터의 장이 되며"를 "위원 중에 호선하며"로 한다.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3조(보조금의 반환) 도지시는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  - 1.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
  - 2.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
  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 - 4.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35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(위탁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항의 위탁기간 및 제15조제5항의 센터의 장 임기 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의 수탁기관 및 센터의 장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6조(기능)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	<u>〈삭 제〉</u>
8.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및 보육 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	<u>〈삭 제〉</u>
9. 벽지·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	<u>〈삭 제〉</u>
10. (생 략)	10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	제8조(위원의 위촉 해제)
해당하는 경우 <u>위원을 해촉</u> 할 수 있다.	<u>위원의 위촉을 해제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	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
<u>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	<u>경우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~ ② (생 략)	제12조(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탁기간은 <u>3년으로</u> 하되 기존의	③ <u>5년 이내로</u>
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	
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센터의 장은 연간운영계획 및 업무 추진상황을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연 2회 보고하여야 한다.	<u>〈삭 제〉</u>

현 행	개 정 안		
<u>〈신 설〉</u>	⑥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		
제15조(구성) ① ~ ④ (생 략)	제15조(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		
<ul><li>⑤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, 임기는 <u>3년으로</u>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</li><li>⑥ (생 략)</li></ul>	⑤         5년 이내로         ⑥ (현행과 같음)		
제17조(운영위원회) ① ~ ④ (생 략)	제17조(운영위원회) ①~④(현행과 같음)		
<ul> <li>⑤ 위원장은 <u>센터의 장이 되며</u>,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</li> <li>⑥ ~ ⑧ (생 략)</li> </ul>	⑤ 위원 중에 호선하며            6 ~ ⑧ (현행과 같음)		
제23조(보조금의 반환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에 대해서 이미 내어준 도비 보조금 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1.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 2.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4. 시설운영의 정지・취소, 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	제23조(보조금의 반환) 도자는 어린이집의 설치 ·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1.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·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. 사업목적외의용도로보조금을 시용한 경우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.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「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」제35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

### 관계법령 등 발췌

### □ 영유아보육법

- 제40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 자,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,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.
  - 1.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·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
  - 2.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
  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 - 4. 삭제 <2011.8.4.>
  - 5.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제46조(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)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 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)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  - 1.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- 가.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
    - 나.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
    - 다.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
    - 라.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
  - 2.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·간호사 또 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
  - 3.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
  - 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
  - 5. <u>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</u>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

- 제47조(보육교사의 자격정지)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) 이내의 범위에서 <u>보건복지부령</u>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  - 1.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
  - 2.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
- 제48조(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
  - 2.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 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  - 3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
  - 4.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- 5.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- 6.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
  - 7.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
  - 8.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.
  - 1.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2년
  - 2.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10년(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)
- 제51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수 있다.
- 제52조(도서・벽지・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) ① 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도서・벽지・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관할 시・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,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- 제26조(권한의 위임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<u>법 제51조</u>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  - 1.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
  - 2.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<u>법 제51조</u>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 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  - 1.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
  - 2.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
  - 3.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
  - ③ 삭제 〈2012.2.3.〉 ④ 삭제 〈2012.2.3.〉

### 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- 제35조의9(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) 법 제40조제5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(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이는 1명으로 본다)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 - 2.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,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 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알린 경우
- 제39조의3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)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 - 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  - 3. 대표자의 경력사항
  - 4.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  - 5.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
  - 6. 법인 · 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
  - 7. 향후 3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(예산서를 포함한다)

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은 <u>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</u>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삭제 <2012.8.17.>
-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수탁기관"이라한다)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<u>별지 제20호서식</u>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⑤ 수탁기관은 법인·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,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,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변경 사유서
- 2. 대표자 경력사항(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3.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(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4.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정관·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5.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

[제39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〈2015.9.18.〉]

- 제40조(도서·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) ① 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 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
  - 2. 행정구역상 면 지역
  - 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
  - ②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 · 벽지·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 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
  - 2.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
- □ 2017년 보육사업 안내(426 ~ 427쪽)

〈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위탁〉

업무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,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 할 수 있음.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※ 업무실적 등 평가 시 중앙육이종합지원센터 주관 전국육이종합지원센터 평가 결과 활용가능